

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

제정 23.09.22. 규정 제1호

개정 23.10.18. 규정 제4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「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(RIS)」의 수행을 위하여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본부에 설치된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) 본부의 명칭은 “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”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라 칭하고, 본부는 전북지역 대학교의 총괄대학인 전북대학교(이하 “총괄대학”이라 한다)에 둔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참여대학”이란 「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」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참여하는 대학을 말한다.
2. “핵심분야”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의 중점 추진 분야를 말한다.
3. “JST 공유대학(원)”이란 ‘전북새만금텍(Jeonbuk Saemangeum Tech)’의 약칭으로 전라북도 내 지자체,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이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는 온라인(LMS) 기반의 가상 공유대학(원)이다.
4. “융합전공”이란 JST 공유대학(원)에서 개설한 융합교육과정을 말한다.
5. “공동교양”이란 JST 공유대학(원)에서 개설한 교양교육과정을 말한다.

제4조(사업)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, 사업비 확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교육혁신방안 기획·분석·진단 및 계획 수립·추진 총괄
2. 참여대학 교육체계 분석 및 교육혁신 프로그램 발굴
3. 대학교육혁신 관련 학사운영 관리 및 지원
4. JST 공유대학(원) 설립 및 공동캠퍼스 구축·운영
5. JST 공유대학(원) 핵심분야 융합전공 및 교육과정 운영
6. 대학교육 혁신 점검·관리 및 성과평가
7. 본부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·운영
8. 본부 예산편성·집행·결산
9. 그 밖에 대학교육혁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조직 및 기능) 본부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교육혁신실, 행정지원실 등을 두며, 그 기능에 맞게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조직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교육혁신실 : 대학교육혁신방안 기획·분석·진단 및 성과 확산, 공유대학 학생 모집·선발, 공유대학 교육과정 개발·운영 및 학사관리 등
2. 행정지원실 : 본부 LMS 시스템 구축 및 관리, 공동캠퍼스 구축 및 운영, 대학교육혁신본부 예산 편성·집행 및 인사 관리 등
3.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

제6조(임원 및 직무) ① 본부에는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과 전북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(이하 “부분부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본부장은 총괄운영본부장의 추천으로 총괄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본부를 대표하며 본부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부분부장은 총괄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본부장과 부분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직원 등) ① 본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사무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관계기관·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대학교육혁신위원회) ① 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혁신위원회(이하 “혁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운영과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·관리 사항
3. JST 공유대학(원) 학생선발 및 인증에 관한 사항
4. JST 공유대학(원) 학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5. 성과관리와 환류 체계 확산과 관련된 사항
6. 본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본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필요한 주요 사항

②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핵심분야별 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참여대학의 관련 처장을 우선 위원으로 위촉하며 외부 산업체 전문가는 사업단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본부 사업추진실적 및 우수성과 등의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와 혁신본부 내 소과제 운영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부 사업실적 및 우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
2. 핵심 지표 및 자율지표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3. 미비 사항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4. 본부에서 운영하게 되는 소과제 등 필요에 따른 사항
5.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평가에 관한 사항

②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, 위원은 대학 및 산업체 등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

20명 이내로 구성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각 사업이나 과제별 평가위원은 사업과 과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실무위원회) ① JST 공유대학(원) 융합전공과목의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융합전공 콘텐츠 개발 및 심의에 관한 사항
3.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
4. 공통교양 콘텐츠 개발 및 심의에 관한 사항
5. 비교과 콘텐츠 개발 및 심의에 관한 사항
6. 비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융합전공교육과 공통교양교육 및 공유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등) 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, 협의회 및 TF 등을 둘 수 있다.

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재 정

제12조(재정 및 회계연도) ① 본부의 재정은 국고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②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사업 협약에 따른 사업연도와 같다. 다만,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지원기관과 지원협약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업비 집행 및 관리) ①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「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과 JB지산학협력단에서 수립한 「전북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관리 및 세부 집행 기준」에 의거 집행·운용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명시한 것 외에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4조(세부 사항)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업 관련 훈령 및 지침

등에 따른다.

② 이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3.09.22. 규정 제1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3.10.18. 규정 제4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